

1.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

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」(법률 제21446호, 2026.3.5. 제정, 2026.7.1. 시행)이 제정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광주·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관할구역 중 “광주광역시”, “전라남도”를 “전남광주통합특별시”로, 광주·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남동부사무소의 위치란 중 “전라남도” 부분을 “전남광주통합특별시”로 정비하고자 함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중소벤처기업부령 제 호

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광주광역시·전라남도”를 “전남광주통합특별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”를 “전남광주통합특별시”로 한다.

별표 1의 광주·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관할구역란 중 “광주광역시, 전라남도”를 “전남광주통합특별시”로 한다.

별표 2의 광주·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남동부사무소의 위치란 중 “전라남도”를 “전남광주통합특별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지방중소벤처기업청) ① ~ ③ (생 략)	제13조(지방중소벤처기업청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성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다만, 광주·전남지 방중소벤처기업청의 성장지원 과장은 <u>광주광역시·전라남도</u> 내의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주 특별자치도 내의 제19호부터 제 22호까지의 수출 지원 업무를 분장한다.	④ ----- -----. ----- ----- <u>전남광주통합특별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24. (생 략)	1. ~ 24. (현행과 같음)
⑤ 1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의 창업벤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고, 2급지 지방중소벤처 기업청의 지역혁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 다만, 광주· 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창 업벤처과장은 <u>광주광역시 및 전 라남도</u> 내의 다음 각 호의 사항 과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제29호 부터 제34호까지의 시험·분석 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.	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<u>전남광주통합특별 시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1. (생 략)	1. ~ 41. (현행과 같음)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